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6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1) 개정 필요성	3
(2) 전부개정법률안 조문 체계	7
2. 주요 조문별 검토	9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9
(2) 법인격 및 설립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1
(3) 사업 (안 제6조)	13
(4) 대학원의 설치 등 (안 제7조)	16
(5) 임원 및 이사회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8
(6)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 (안 제12조, 제13조, 제15 및 제16조)	26
(7)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안 제14조)	29
(8) 연구자 등의 파견 등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30
(9) 지도·감독 등 (안 제20조)	33
(10) 비밀 유지 의무 등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5
(11) 벌칙 및 과태료 (안 제25조 및 제26조)	37
(12) 부칙	39
<참고>	4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구원의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 진흥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문화 심층 연구 및 교육 사업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법률에서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임원의 선임 방법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특수 법인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구원의 사업을 한국문화 심층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고전의 수집·연구·번역 및 보급, 국내외 교류·협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원장, 이사, 감사의 정수·임기·선임방법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정부 출연금·보조금, 민간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입세출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마. 교육부장관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특정 범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1조 및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개정 필요성

□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임¹⁾.

현행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는 연구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출연금,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연구요원 등의 파견, 대학원의 설치, 사업계획서·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원의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 진흥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연구원의 법인격, 설립 및 정관, 사업 범위,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운영재원 등 특수법인으로서 연구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원은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진흥 등 국가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타공공기관임²⁾. 이와 유사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고전번역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는데 위 두 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한국고전번역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원이 국가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 타 기타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법률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수법인은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됨.

특수법인의 특징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점 등이 있음.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황 >

1. 설립 목적 :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2. 연 혁

- 1978. 6. 22.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 인가
- 1978. 6. 24.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978. 6. 30. 준공 및 개원, 초대 원장 이선근 박사
- 1978. 12.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3116호)
- 1979. 5.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9455호)
- 1980. 3. 5. 한국학대학원 개원
- 1981. 7. 6. 문화재관리국에서 장서각 도서 본원 이관(대통령령 제10588호)
- 1991. 12.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판 완간
- 2005. 2. 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3. 기능

-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요원 양성
- 한국 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편찬
- 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 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
- 국내외 한국학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관리

4. 조직

- 1대학원(한국학대학원)
- 4처(기획처, 연구처, 교학처, 국제교류처), 3부(감사부, 한국학사전편찬부, 출판문화부)
- 1각(장서각), 1관(한국학도서관), 1국(사무국), 1단(한국학진흥사업단)

5. 정원

구 분	교수직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전문직	사서직	별정직	계
정규직	56	33	63	15	27	13	3	210
무기계약직	-	7	7	21	20	1	-	56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한국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바로 세우며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으로, 연구원을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적 지위의 안정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구원의 법적 지위 및 지배구조·지도감독·회계 등 운영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에서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상 잔여 임기로 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전부개정법률안 조문 체계

□ 현행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출연금, 국유 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연구요원 등의 파견, 대학원의 설치, 사업계획서·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법률 제명을 「한국학중앙연구원법」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연구원의 법인격, 설립 및 정관, 사업 범위,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운영재원 등 특수법인으로서 연구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법률과 전부개정안 조문체계 비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1개 조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26개 조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학중앙연구원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제7조(대학원의 설치 등)
	제8조(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1개 조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26개 조문)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이사회)
	제11조(교직원의 임면)
	제12조(운영재원)
제2조(출연금)	제13조(출연금 등)
제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사업연도)
제7조(사업계획서) 제8조(결산보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17조(연구자 등의 파견)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제18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제5조(자료의 제공 등)	제1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20조(지도·감독 등)
	제21조(비밀 유지 의무)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11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한국학”이란 <u>과거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울러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u> 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유형·무형의 한국 문화 자산을 구축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학문을 말한다.

□ 개정안 제1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설립·운영, 대학원의 설치 등 한국학 연구·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조항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한국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사용빈도가 높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³⁾, 개정안의 ‘한국학’ 정의의 필요성 및 의미의 명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한국학’의 연구 범위를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른 한국학의 정의로 인해 오히려 연구 범위의 확장을 제한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3)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244

(2) 법인격 및 설립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전부개정법률안
제3조(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u>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u>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구원의 법인격, 설립등기,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법인으로 성립하는 점, 법인으로 활동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법인은 정관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정해지는 점, 기타 특수법인 관련 입법례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⁴⁾⁵⁾.

□ 다만, 개정안의 정관 기재사항 중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5호)은 연구원의 조직 특성, 개정안 제11조의 규정⁶⁾ 및 현행 정관의 조직 관련 규정⁷⁾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임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533~536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5) 「한국고전번역원법」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1조(교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7) 「한국학중앙연구원정관」

제33조(교직원) ① 연구원에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② 교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사업 (안 제6조)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의 기획·수행 및 연구지원과 정책 개발 2. 국내·외 한국학 전문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3. <u>한국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정리·번역·연구 및 보급 확산</u> 4. 한국학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과 관련된 출판, 학술지 발간, 전시,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6. 한국학 기초자료 관련 콘텐츠 구축·운영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개정안 제6조는 연구원의 사업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의 기획·수행 및 연구지원과 정책 개발, 국내·외 한국학 전문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한국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정리·번역·연구 및 보급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연구원의 사업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특수법인인 연구원이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수행 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 입법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⁸⁾.

8) 「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 현행 연구원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①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②국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각종 연구기획 및 사업의 지원·관리, ③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④한국 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편찬, ⑤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⑥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⑦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⑧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⑨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 ⑩위 각 호와 관련하여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⑪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사업 내용 중 ‘한국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정리·번역·연구 및 보급 확산’(안 제6조제3호)은 관련 기관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국고전번역원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내용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고전자료의 번역 사업’은 연구원이 소장한 고문헌을 관리·활용하기 위한 필수적 범위에 한정된 것으로 한국 고전번역원의 전담 고전문헌과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장서각을 중심으로 조선왕실 및 가문 소장 고문헌 약 20만 점을 보존·관리하고 있고 번역 사업은 이러한 소장자료의 연구·활용을 위한 연계적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어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임.

(4) 대학원의 설치 등 (안 제7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제7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제6조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 개정안 제7조는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률과 동일한 취지로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학대학원’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학대학원’이 개정안에 따른 대학원으로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학대학원 현황 >

1. 설립목적

- 한국학 제 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탐구하고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차세대 한국학자 양성

2. 연혁

- 1979. 12. 5. 한국학대학원 설립인가
- 1980. 3. 5. 한국학대학원 개원
- 1999. 10. 15.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4년제)으로 변경
- 2008. 10. 31. 석사·박사과정으로 분리 변경

3. 설치과정 및 정원

- 석사과정(2년제), 박사과정(3년제)
- 입학정원 60명(석사과정 35명, 박사과정 25명) ※ 외국인학생은 정원 외 선발
 - 241명 재학 중(외국인 37개국 116명 포함)(2026.2.1.기준)
- 교원정원 56명

4. 학부 및 전공

- 석·박사 4개 학부, 16개 전공
 - 인문학부(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 문화예술학부(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 사회과학부(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 글로벌한국학부(한국문화학, 고전번역학)

5. 대학원 특징

- 한국학 연구와 교육이 연계된 연구 중심 대학원
- 소수 정예 교육 및 대학원생의 연구사업 참여
- 학제 간 협동강의, 수요자 중심의 개별주제연구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 한국학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문 교육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5) 임원 및 이사회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전부개정법률안
제8조(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u>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u>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u>원장 및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u> ③ <u>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추천위원회가 원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인은 국회가 추천(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한다)하는 사람을 임명한다.</u> ⑥ <u>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에 추천한다.</u> ⑦ <u>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u> ⑧ <u>임원(원장 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u> 1. 법령 및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선거 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u>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③ <u>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u> 제10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구원의 사업계획, 예산

전부개정법률안

및 결산,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기본규정의 제정과 개폐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구원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연구원의 임원 및 이사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임원 및 이사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⁹⁾.

9) 「한국고전번역원법」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4.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6.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의 임원 규정(안 8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임원 관련 내용]

구분	현행(정관)	전부개정법률안
임원정수	-이사장 1명 포함한 이사 5명 이상 11인 이내 -감사 2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원선임 기준	없음	- <u>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u>
원장임명 절차	-이사회에서 선임, 교육부장관 승인 -이사회 의결 시 공개모집으로 선임 가능	- <u>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이사회 심의·의결, 교육부장관 임명</u>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구분	현행(정관)	전부개정법률안
이사임명	-이사회에서 선임, 교육부장관 승인 -당연직 4인(기획예산처차관, 교육부차관, 문체부1차관, 원장)	-<u>이사회에서 심의, 교육부장관 임명</u> -당연직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사 2인 국회 추천(대통령이 소속 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는 사람 임명
감사임명	-이사회에서 선임, 교육부장관 승인 -감사 1인 교육부장관이 추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원임기	-원장, 이사 3년 -감사 2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원 해임사유	(대상) 당연직 제외 임원 (절차)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 (사유) ①법령 및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당연직 제외 임원 + 원장 (절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해임 (사유)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신설> <u>선거 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u> ③현행과 같음

□ 우선, ‘임원정수’와 관련하여 개정안(안 8조제1항)은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여 현행 연구원의 임원 구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고(안 제10조제2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안 제10조제3항)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임원의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음으로, ‘임원선임 기준’으로 개정안(안 8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공성을 갖춘 적절한 인사를 선임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개념의 불명확성,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원이 학술 연구 기관인 점을 고려해 학문적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¹⁰⁾.

다음으로, ‘원장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안 8조제3항·제4항)은 원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0)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3조 ② (생략)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 (생략)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장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연구원 정관에서는 이사회 의결 시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장 공개모집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필수 절차와 차이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에서 원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연구원 임원 구성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이사임명’과 관련하여 개정안(안 8조제5항)은 이사 중 2인을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이사의 국회 추천에 관하여는 기관의 특성, 독립성, 전문성,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윤리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장기 교육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고 있음¹¹⁾.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회 추천 등 전문성에 기반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저해 및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임원 해임 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안 8조제8항)은 현행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및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추가로 ‘선거 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원 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의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다만, ‘편향된 정치 활동’의 표현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임원임기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임원 임명 지연에 따른 기관의 업무 공백 최소화 및 기관 운영의 법적 안정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²⁾.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6)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 (안 제12조, 제13조, 제15 및 제16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출연금)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u> <u>충당하기 위하여</u>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금 등) ① <u>국가는</u> <u>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u>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에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의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관리지표 및 평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사업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는 연구원의 운영재원, 출연금 등,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수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 해당 기관의 운영재원, 출연금,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 입법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¹³⁾.

□ 다만, 출연금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13)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가 '연구원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출연금 지급의 주체 및 용도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출연금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현행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용도에 현행법상 '시설' 추가 및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¹⁴⁾.

14)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7)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안 제14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률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¹⁵⁾.

15)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

(8) 연구자 등의 파견 등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교육·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연구자 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교육·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익하게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5조(자료의 제공 등) ① 연구원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u>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원은 <u>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연구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개정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연구자 등의 파견, 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자료의 제공 요청 사항으로 현행 법률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자료의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 요청’,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 등으로 규정하여 자료의 제공 요청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9) 지도·감독 등 (안 제20조)

전부개정법률안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안 제20조는 교육부장관이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연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 또는 감사의 결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규정함.

□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점,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부여되는 점, 타 기타공공기관에 관한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주무 부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20조제3항에서 ‘교육부장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제2항에서 감사 거부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부장관은 기타공공기

관인 연구원에 대한 자체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감사 거부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규정 사항은 현행 법률과의 관계 및 입법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¹⁶⁾.

□ 특수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는 경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⁷⁾.

1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비밀 유지 의무 등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비밀 유지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개정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연구원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연구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법」의 준용 및 연구원 임직원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외에 비밀 유지 의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책임성 담보 및 타 기타공공기관에 관한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민법」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 관련 내용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임¹⁸⁾.

18)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1) 벌칙 및 과태료 (안 제25조 및 제26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1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개정안 제25조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정안 제26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는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 유지 의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경우 입법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¹⁹⁾. 다만, 감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안 제20조제3항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항의 적절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부칙

전부개정법률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관은 제5조에 따른 연구원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속 하였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제3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의 교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한국학중앙연구원 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안 부칙 제1조에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칙 제2조에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3조에서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4조 및 제5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에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둠²⁰⁾.

개정안은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기존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 교직원 및 대학원 등을 승계하여 업무의 공백 없이 연속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행의 긴급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이사 선임 방식 등 제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연구원의 등기부, 정관, 그 외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교직원 신분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지속성·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임.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개정안의 부칙에는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새롭게 선임하여

20)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기존 임원의 신분을 승계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임원의 경우 별도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새 법인 설립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만 둘 수도 있음²¹⁾.

그러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기존 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인지 해임되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임원의 승계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입법례를 보면 해임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음²²⁾.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임원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만큼 새로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경우 임직원의 신분이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³⁾.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상 잔여 임기로 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기존 임원의 신분을 승계하지 아니할 취지로 임원에

21)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79

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1999.1.29.)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장 및 감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및 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신설기관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23)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중략)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2018다207588 판결)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는바, 개정안 시행 이후 임원 및 이사회 등 연구원 조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새롭게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연구원의 임원 선임, 정관 개정 등의 절차를 수행할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에 연구원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대학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부칙에 ‘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학대학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대학원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연구원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²⁴⁾의 적용 대상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직원 등의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⁵⁾.

그 외 전부개정안의 경우 변경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경과조치 외에 종전 법률의 집행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²⁶⁾²⁷⁾.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12.27.)

제7조(연금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85

26)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p.899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개요

(설립목적)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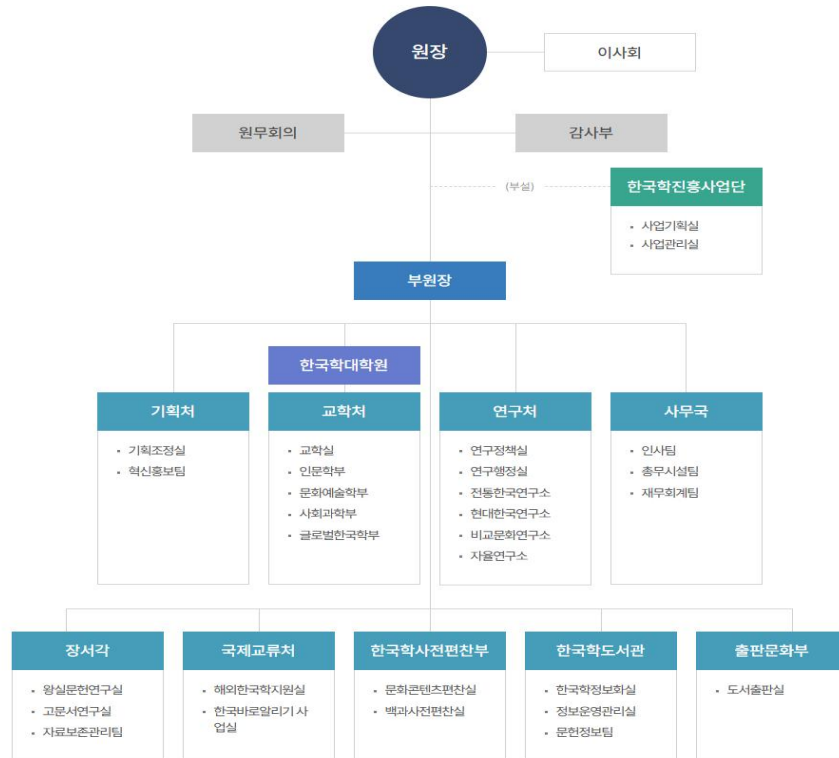
(연혁)

- 1978. 6. 22.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 인가
- 1978. 6. 24. 재단법인 설립 등기
- 1978. 6. 30. 준공 및 개원, 초대 원장 이선근 박사
- 1978. 12.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3116호)
- 1979. 5.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9455호)
- 1980. 3. 5. 한국학대학원 개원
- 1981. 7. 6. 문화재관리국에서 장서각 도서 본원 이관(대통령령 제10588호)
- 1991. 12.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판 완간
- 2005. 2. 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기능)

-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요원 양성
- 한국 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편찬
- 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 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
- 국내외 한국학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관리

2. 조직도



3. 2026년도 예산

(단위: 천원)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I. 정부출연금	34,633,000	I. 사업비	13,538,000
II. 자체수입	3,694,000	II. 인건비	21,706,000
		III. 기본경비(운영비)	2,570,000
		IV. 예비비	513,000
총계	38,327,000	총계	38,327,000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원 명단(2026. 1. 2.)

구 분	성 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비상임)	김주성	24. 6. 19. ~ 27. 6. 18.	
이사 (비상임)	이상훈	23. 8. 25. ~ 26. 8. 24.	
이사 (비상임)	이명희	24. 6. 19. ~ 27. 6. 18.	
이사 (비상임)	김원중	24. 6. 19. ~ 27. 6. 18.	
이사 (비상임)	이명선	25. 1. 16. ~ 28. 1. 15.	
이사 (비상임)	고대혁	25. 1. 16. ~ 28. 1. 15.	
이사 (비상임)	<공석>		
이사 (당연직)	김낙년	24. 7. 29. ~ 27. 7. 28.	원 장
이사 (당연직)	임기근	26. 1. 2. ~ 재임기간	기획예산처차관
이사 (당연직)	최은옥	25. 7. 14. ~ 재임기간	교육부차관
이사 (당연직)	김영수	25. 8. 14. ~ 재임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감사 (비상임)	<공석>		
감사 (비상임)	<공석>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 설립목적

- 한국학 제 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탐구하고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차세대 한국학자 양성

○ 연혁

- 1979. 12. 5. 한국학대학원 설립인가
- 1980. 3. 5. 한국학대학원 개원
- 1999. 10. 15.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4년제)으로 변경
- 2008. 10. 31. 석사·박사과정으로 분리 변경

○ 설치과정 및 정원

- 석사과정(2년제), 박사과정(3년제)
- 입학정원 60명(석사과정 35명, 박사과정 25명) ※ 외국인학생은 정원 외 선발
- 241명 재학 중(외국인 37개국 116명 포함)(2026.2.1.기준)
- 교원정원 56명

○ 학부 및 전공

- 석·박사 4개 학부, 16개 전공
- 인문학부(한국사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국어학·국문학)
- 문화예술학부(인류학·민속학, 종교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
- 사회과학부(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윤리학, 교육학)
- 글로벌한국학부(한국문화학, 고전번역학)

○ 대학원 특징

- 한국학 연구와 교육이 연계된 연구 중심 대학원
- 소수 정예 교육 및 대학원생의 연구사업 참여
- 학제 간 협동강의, 수요자 중심의 개별주제연구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 한국학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문 교육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